






동물검역의 수출입검사 등에 관한 부적절 사례

2019년~ 2024년

수출·수입	품명	생산국/도착국가	위반 근거 조문	개요	사진	조치 상황
수출입	수정란·정액	중국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2호, 제63조 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45조, 제53조, 관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제67조 형법 제60조	필요한 세관과 동물검역 검사를 받지 않고, 인증서 교부를 받지 않고, 또한, 그것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18년 6월 29일에 오사카항에서 중국으로 소 수정란 235개, 소 정액 130개를 불법 반출했다.		2019년 3월 9일, 일본인 2명(반출·반입자 및 그 의뢰자)을 체포했음.
수입	축산물	베트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63조 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43조	2019년 6월 13일, 베트남에서 도쿄 국제공항(하네다)에 수입금지품(우제류 고기 약 10kg, 기러기목 조류의 알 약 25kg)을 휴대품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했다.	 	2019년 7월 21일, 경시청이 베트남인 1명을 체포했음.
수입	축산물	필리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63조 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43조 형법 제60조	2019년 5월 17일, 필리핀에서 후쿠오카 공항에 수입금지품(소시지 등 약 91.9kg)을 휴대품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했다.		2019년 8월 6일, 후쿠오카현 경찰이 일본인 2명을 체포했음.
수입	축산물	태국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63조 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43조	2019년 9월 3일, 태국에서 도쿄 국제공항(하네다)에 수입금지품(소시지 1.0kg)을 휴대품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했다.		2019년 9월 3일, 경시청이 태국인 1명을 체포했음.
수입	축산물	베트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1항 제1호, 제63조 제2호 형법 제60조	①2019년 6월 17일, 베트남에서 간사이 국제공항에 수입금지품(돼지고기 소시지 및 돼지고기 가공품 5.25kg)을 휴대품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했다. ②동년 8월 6일, 베트남에서 간사이 국제공항에 축산물(개고기 17.6kg)을 휴대품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했다. ③동년 8월 15일, 베트남에서 간사이 국제공항에 수입금지품(소고기 2.0kg)을 휴대품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했다.		2019년 10월 15일, 오사카부 경찰이 베트남인 3명을 체포했음.

동물검역의 수출입검사 등에 관한 부적절 사례

2019년~ 2024년

수출·수입	품명	생산국/도착국가	위반 근거 조문	개요	사진	조치 상황
수입	축산물	태국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63조 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43조	2019년 11월 25일, 태국에서 나리타 국제공항에 수입금지품(소시지 10.45kg)을 휴대품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했다.		2020년 1월 21일, 치바현 경찰이 태국인 1명을 체포했음.
수입	축산물	대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63조 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호	2019년 11월 14일, 대만에서 중부 국제공항에 축산물(우제류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 피떡[혈병(血餅)] 약 11kg, 기러기목 조류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 피떡[혈병(血餅)] 약 39kg)을 휴대품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했다.		2020년 3월 6일, 아이치현 경찰이 대만인 1명을 체포했음.
수입	축산물	중국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63조 제2호, 형법 제60조	2021년 5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 6회에 걸쳐 중국에서 국제 우편으로 수입금지품(돼지고기 가공품 등 약 395kg)을 국내에 불법 반입했다.		2022년 2월 28일 및 3월 1일, 오사카부 경찰이 중국인 3명을 체포했음.
수입	축산물	중국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63조 제2호	2022년 10월 중순부터 11월 상순까지 3회에 걸쳐 중국에서 국제 우편으로 수입금지품(닭고기 가공품 등 약 11.5kg)을 국내에 불법 반입했다.		2023년 1월 25일, 오사카부 경찰이 중국인 1명을 체포했음.
수입	축산물	미얀마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7조 제1항 제1호, 제63조 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43조, 제45조	2023년 6월 23일 미얀마에서 도쿄 국제공항(하네다)에 수입 금지품(우제류 고기 등 약 1.25kg)을 휴대품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했다.		2024년 2월 12일, 경시청이 미얀마인 1명을 체포했음.